

이 매뉴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북



지원주택

정신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와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북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태화샘솟는집에서는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3년간, 정신보건영역에서는 최초로 지원주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주택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초기와 사업 안정기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역시 노하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과 복지가 구분되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비의도적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영역에서 지원주택 등의 자립생활주택을 비롯한 새로운 거주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정신 보건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 거주시설과 다른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고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회원(정신장애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먼저 자립생활을 시작한 회원들이 새로 주거지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살아가려 준비하는 회원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임이 진행되는 놀라운 경험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동료자립지원가로 부르기로 했고, 모임에 필요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기관이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장벽이 여전히 높고 새로운 법률안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 지원주택을 운영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태화샘솟는집에서는 지난 3년간의 사업을 정리하여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이드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태화샘솟는집이 추구하는 클럽하우스 모델의 사명처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 9월

태화샘솟는집 관장 **문용훈**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북



CONTENTS

Part 1

지원주택의 정의

1. 주거복지서비스의 필요성	8
2. 지원주택의 정의	9
3. 지원주택의 목적	10
4. 지원주택 사례	11
5. 가이드북의 제작 목적	13

Part 2

지원주택의 운영

1. 진행과정	16
2. 진행과정별 운영방법	16
1) 주택의 확보, 계약	
2) 주택정비	
3) 이용자 선정	
4) 계약 및 입주	

Part 3

지원주택의 서비스

1. 전환단계	28
1) 전환단계 개요	
2) 전환단계 지원서비스	
2. 초기적응단계	30
1) 이사 직후 초기 개입의 중요성	
2) 이사 직후 초기 지원서비스	
3. 유지단계	32
1) 유지단계 개요	
2) 유지단계 지원서비스	

Part 4

지원주택의 운영 성과

1. 산술적 평가	42
2. 이용자의 경험적 평가	45

Part 5

양식

1. 태샘집 2014-01) 입주 신청서	52
2. 태샘집 2014-02) 계약서	53
3. 태샘집 2014-0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4
4. 태샘집 2014-04) 입주자 활동 계획서	55
5. 태샘집 2014-05) 보호자 협약서	57
6. 태샘집 2014-06) 방문일지	58
7. 태샘집 2014-07) 주택의 규칙	59
8. 태샘집 2014-08) 입주자 분쟁해결	62
9. 태샘집 2014-10) 물품구입리스트	63

지원주택의 정의

1. 주거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우리나라 주거복지서비스 지금까지의 상황¹⁾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생활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는 공공의 개입자체가 절대적으로 취약함
- 주택과 관련된 자원을 보유한 영역(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나 LH공사)에서는 연성적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음
-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영역(사회복지 전문체계)에서는 대상자의 주거상황은 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재가라는 둘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주거상황 자체에 대한 개입은 사실상(복지)서비스 영역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음
- 문화적 특성상 주거를 값비싼 재화로 판단함
- 정신장애인의 병리적 취약성에만 초점을 두어 주거정책을 시설수용 방향으로 둠

정신장애인의 주거복지서비스 관련 욕구²⁾

- 일반장애인의 주요서비스 욕구는 소득 > 의료 > 고용 > 주거인 반면 정신장애인의 욕구는 주거 > 소득 > 고용 > 의료로 나타남
- 정신질환으로 장기입원한 환자들 중 44.9%는 거주지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함(2008 국가인권위원회)
- 정신장애인이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의 88.5%가 일반주택이라고 응답함

지원주택의 도입 필요성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복지서비스 제공이 법에 명시됨
- 입원조건 강화와 퇴원의 유연화로 인해 본격적인 탈원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문재인정부에서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과제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국정운영방향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새롭게 제시될 주거환경조성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신보건영역에서도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함

1)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남기철, 2016.
2) 정신장애인의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용훈, 2017.

2. 지원주택의 정의

구분	정의
미국 지원주택협의회 (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 지원주택은 가장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안정, 존엄,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렴한 주거지와 지원을 결합한 것이다.
미국 주택도시 개발청 (United State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영구적 지원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e)은 광범위한 보건육구 및 심리사회적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융통성 있는 지원과 저렴한 지역사회기반 주거를 연결시킨 것이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 (NIMH)	• 클라이언트의 선호와 목적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된 융통성 있는 재활과정을 사용하는 접근으로 정상화된 주거, 일,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한다.
Vandiver(2013)	• 지원주택은 소비자 역량강화와 지역사회통합에 가장 기여하는 접근으로 영속적이고 저렴한 주거와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를 연결한 것이다.
O'connell외(2010)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와 주거보조비 지원을 결합한 다면적 접근이며 서비스는 보통 장기적 기간 동안 주어진다.
Tabol외(2010)	• 지원주택은 소비자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통합의 원칙하에 주거육구와 지원육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접근이다.

출처 : Parcell, C., Moutou, O. 2014. An evaluation of the Nature and effectiveness of models of supportive housing.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재인용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민석, 2017.

미국 물질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의 정신장애 지원주택 기준

- 개인이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이 임대계약은 기관이나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기 보다는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 주거는 영속적인 상태여야 한다.
- 주택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주거는 지역사회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총소득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 서비스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 개인이 주거와 서비스를 선택한다.
-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 위기서비스는 매주 7일, 24시간동안 이용 가능해야 한다.

출처 : Tabol, C., Drebing, C., Rosenheck, R. 2010. Studies of 'supported' and 'supportive' hous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model descriptions and measuremen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3, pp. 446-56. 재인용 정신장애인의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민석, 2017.

Tabol외(2010)가 제시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의 5개 핵심원칙

- 첫째, 정상화된 주거환경과 비용지불가능성이다. 정신장애 동료가 아닌 사람들과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주거지는 영속적이거나 장기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계약의 형태나 계약서는 일반 주택시장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주택의 형태는 지역사회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주거지 방문에 대한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 둘째, 융통성 있는 개별화된 지원이다. 위기서비스는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인근지역에 자원이 있어야 한다.
- 셋째, 주거와 서비스는 분리되어야 한다. 주거유지에 대한 조건은 없어야 하고 주거기관과 서비스 기관은 기능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정규적인 상주직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 넷째, 선택이다. 주거대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 다섯째, 지원주택은 준비세팅이어서는 안 된다. 지원주택으로의 즉각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원주택의 목적

지원주택 서비스의 세 가지 목표³⁾

- 주거 안정성의 성취
- 기술수준과 수입증대⁴⁾
- 보다 나은 자기결정권의 확보

자립생활유지지원 서비스 내용⁵⁾

- 입주민의 심리적 지지와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 재정관리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의료서비스, 일자리, 직업훈련 등)
- 자치모임 구성 및 운영지원
- 입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다른 기관과의 일처리 지원(동 주민센터, 병원 등)
- 주택의 개·보수 상담 및 주택공사와 조율
- 가사 및 생활기술 개발 지원
- 그 외 입주민의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주거상향이동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

궁극적으로 지원주택은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계되어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남기철, 2009

4) 주거유지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한다는 의미, 미국의 홀리스 주거보장 정책과 시사점, 남철관, 김유정, 2004.

5)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남기철, 2011.

4. 지원주택 사례

미국 주택도시 개발청(United State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홀리스 주거지원 프로그램⁶⁾

정의	응급쉼터 (Emergency Shelter)	쉼터+보호 프로그램 (Shelter Plus Care)	지원주거 (Supportive Housing)	SRO프로그램 (Single-Room Occupancy)
프로그램 지원자	• 주지방정부	• 주지방정부 • 비영리단체(NGO) • 지방 정신위생 센터 • 준정부기관	• 주지방정부 •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ies)	•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ies) • 비영리단체(NGO)
구성요소	• 응급쉼터 • 사회적 서비스	• 입주자에 대한 지원 • SRO입주에 대한 임대보조	• 전환주거 • 피난소 • 장애인용 영구주택 • 혁신적 지원주택	• SRO 주택
지원활동 및 서비스	• 심리회복/대화 • 사회복귀 • 지지적 서비스 • 비용운용 • 홀리스 예방	• 임대조성	• 물건매매 • 거주자사회복귀지원 • 신규건설 및 임대 • 운영관리 • 지원서비스	• 임대조성
입주자	• 단신 및 가족 •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사람	• 신체장애가 있는 단신 홀리스와 그들의 가족	• 이전주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단신 및 가족 홀리스 • 영구주택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신체장애 홀리스	• 단신 홀리스
지원기간	• 1년	• 3년	• 5년~10년	• 10년

6) 홀리스 주거보장, 김선미, 2004.

홈리스 프로그램 중 지원주거 프로그램 ⁷⁾

지원주거 프로그램	유형별 내용
전환주택 (TH : Transitional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 및 가족 홈리스들이 영구주거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 • 24개월간 거주 • 독립생활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장애홈리스를 위한 영구적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홈리스를 위해 지원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주거 • 특수욕구를 가진 인구집단이 영구적인 세팅에서 가급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단일 건물 안에 16명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거구조
세이프 헤이븐 (Safe Heav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에 있고 다른 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중증 정신질환 홈리스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거 형태 • 기간을 정하지 않고 24시간 이용 • 부엌, 식당, 욕실 등 공동공간 제공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프로그램(S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리스의 서비스 욕구를 다루며 주거까지 제공하지는 않는 경우
혁신적 지원주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들이 여타의 지원주거 형태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프로그램의 초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지원주택의 양국사례

국가	기관명	유형	구조	계약방식	입주기간
한국 (시범사업)	• 등지주택	• 전환주택	• 1인실 원룸	• 민간 - 기관 - 입주자 (2중 계약)	• 최대 12개월(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행복하우스	• 영구주택	• 1인실 원룸	• 공공 - 입주자	• 최대 20년
미국 ⁸⁾	• Pathway to Housing	• 영구주택	• 1인실 원룸	• 민간 - 기관 - 입주자 (2중 계약)	• 영구적
	• Community Access	• 전환주택, 영구주택, 위기휴식센터 등	• 1인실 원룸	• 공공 - 기관 - 입주자	• 전환주택 : 8~16개월 • 영구주택 : 영구적 • 위기휴식센터 : 7일 이내
	• CSP-NJ	• 영구주택	• 3인1실 주택 • 최대 9명 거주 • 독립된 침실과 욕실, 주방과 거실 공유	• 공공 - 기관 - 입주자	• 10년

7) 미국의 홈리스 주거보장 정책과 시사점, 남철관, 김유경, 2004.

8)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민석, 2017.

-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주택도 유형이나 구조, 계약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지원주택이 확대 보급되면서 주거유형과 지원의 결합이 다양해졌고 어떤 모델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됨
- 최근 들어 특정 유형의 지원주택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지원주택 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유형의 지원주택에서 임차인의 안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CSH, 2012)
- 질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이 존재하는 것이 정신장애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다 잘 보장할 수 있음

지원주택의 유형 선택

- 지원주택의 운영방식은 상황과 재정지원처,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달라짐
- 획일적인 조건에 맞추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기반이나 지원, 기관의 상황과 특성,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대입 / 진행 하는 것이 필요

5. 가이드북의 제작 목적

태화생수는집에서 3년간 진행되었던 지원주택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주거서비스 및 지원주택의 유형과 실천경험을 소개하고자 함.

1) 전환주택(TH: Transitional Housing)의 운영

- 태화생수는집에서 진행한 '등지주택' 사업과 유사한 유형
- 영구적 주거로 전환하기 전 단계나 기간에 활용 가능
- 민간,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2) 통합적인 주거서비스 제공

- 다양한 유형의 주거에서 실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천경험 기록
- 입주자의 주거지 전환, 초기적응, 유지단계별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기록
-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

3) 동료자립지원가 활동 내용 정리

- 주거복지서비스 전 단계에 동료자립지원가 활동 가능

한계점

- 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수 등 지역별 차이점 다루지 못함
- 구체적 주택 확보 방안의 부재

지원주택의 운영

1. 진행과정

지원주택을 준비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는 진행과정



※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Ⅲ. 지원주택 서비스 참고

2. 진행과정별 운영방법⁹⁾

1) 주택의 계약, 확보

주택의 위치

- 입주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방문 횟수가 잦아질 수 있으므로 운영하는 기관과 가까울수록 좋음
-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주택을 분산하거나 인접하게 배치 가능

- ① 분산할 경우 : 낙인 없이 지역사회에 융화되어 살아가는데 유리할 수 있음
- ② 인접할 경우 : 입주자간의 모임이 활성화됨

우리의 경험

'동지주택'은 주택 간 거리가 가까워 함께 저녁을 먹거나 여가활동을 함께 보내는 등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음

-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

선호되는 주택

-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
- ② 골목이 어둡지 않고 밝고 안전한 곳

피해야 할 주택

- ① 지층과 옥탑방
- ② 유흥가나 대로변
- ③ 고령입주자를 고려하여 오르기 힘든 언덕이나 계단이 많은 곳

9) 매뉴얼 내 지원주택 운영방법은 태화생숙는집에서 지원주택을 운영해본 경험을 통해 작성됨.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계약자, 주택의 소유, 입주기간 등으로 인해 운영방법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의 위치는 입주자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고 좋은 조건일수록 비용이 크게 높아짐
 - 입주가 예정된 대상에 맞추어서 위치와 조건을 고려

우리의 경험

'동지주택'입주자에게 방문이 자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인근으로 위치를 정하고 예산내역에 맞춘 월세와 보증금 수준을 검색하여 계약을 진행함

계약방법

(1) 민간임대

- 민간의 집주인과 전월세 임대계약 체결하여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도록 제공
- 매물확인이 쉽고 거래도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계약하기 용이
-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인한 부담
 -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은 지역에서 공공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이용하기 용이함

우리의 경험

'동지주택' 입주자에게 방문이 자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인근으로 위치를 정하고 예산내역에 맞춘 월세와 보증금 수준을 검색하여 계약을 진행함

-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운영기관의 소속법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 민간임대인은 사회복지법인과 계약하는 상황에 불안을 느낄 수 있음

우리의 경험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료를 매월 제때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음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임을 밝혀야 하는가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퍼져 있음. '동지주택'을 시작할 때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려고 한다고 사실대로 설명했고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후 구지 정신장애를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임대업자의 조언대로 계약을 함
- 임대인은 사회복지법인이 계약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현하긴 했으나 임대료 납부에 문제가 없자 대체로 만족함
- 다만 임대인이 함께 거주하는 원룸형 빌라의 경우 임대인이 의심을 갖고 입주자를 관찰하는 모습이 보임

대표적인 민간임대 주택 유형 비교

구분	오피스텔	원룸형 빌라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원룸에 비해 입주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음. 계약과정에서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층에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입주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계약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함
이웃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간 간섭이 거의 없음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음 입주자의 행동을 보고 임대인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임대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함께 거주하지 않으므로 입주자 변경이 쉽고 갈등이 생기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인이 입주자에게 관심이 높음. 관계가 좋을 경우 지지체계가 될 수 있으나 좋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비쌌(건물마다 차이가 있으나 월 10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원 미만으로 오피스텔에 비해 저렴함
주택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이 밀집해 소음에 취약할 수 있음. 계약전에 확인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룸형의 경우 대개 신축건물로 내부가 깔끔하고 공간의 여유가 다소 있음
주택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가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보수가 늦어질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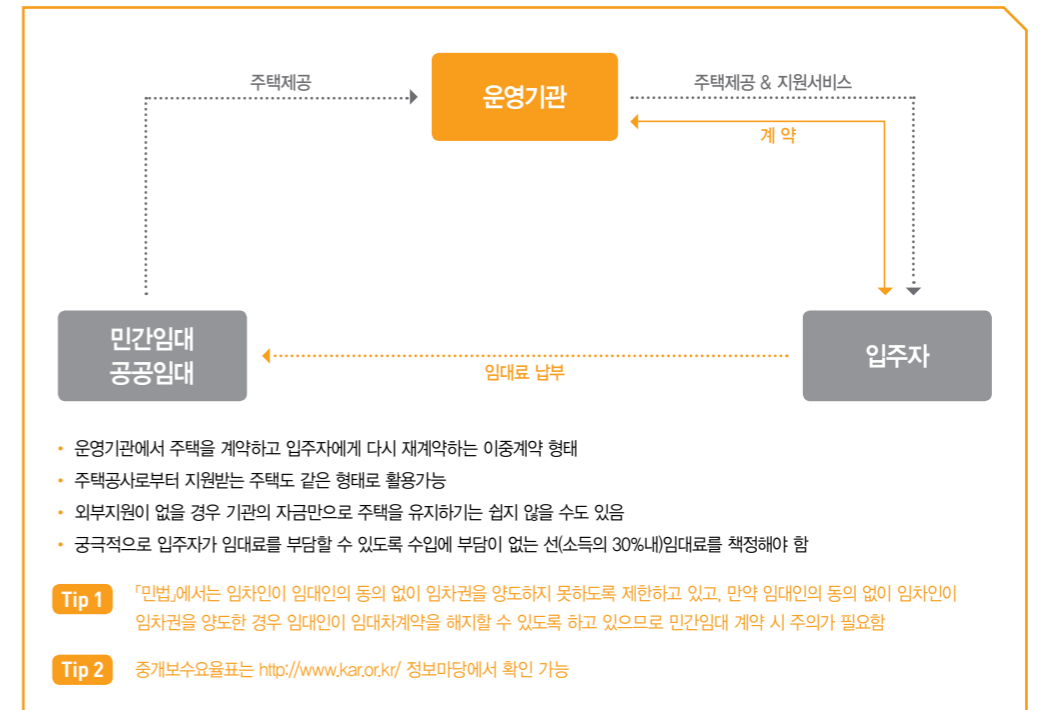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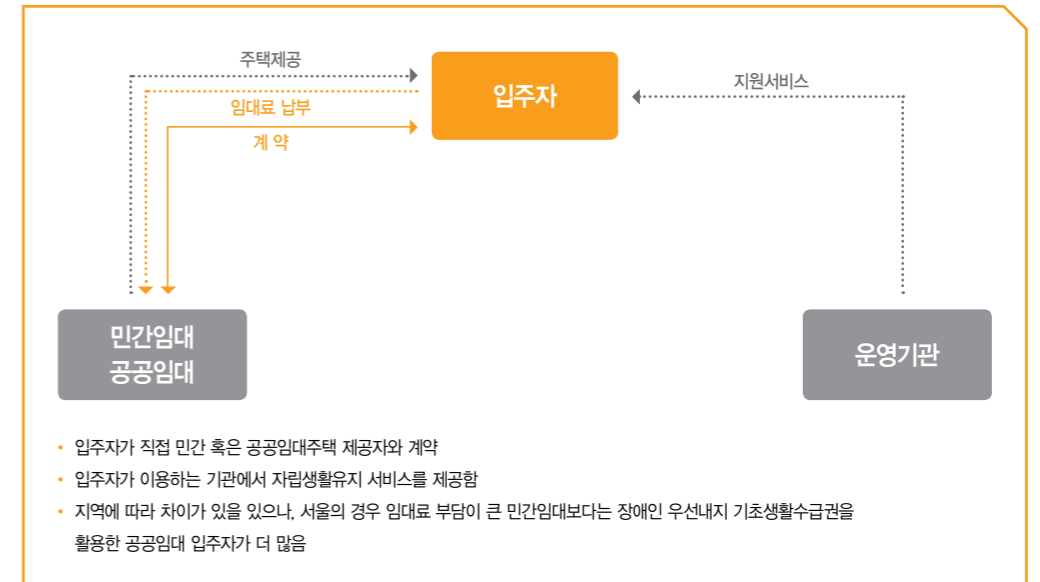
(2) 공공임대

- LH, SH 등 국가에서 일정 자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제공
- 재계약 걱정없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가 가능함
-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기관이나 입주자의 부담이 적음
- 매물이 적고 입찰경쟁구조이므로 신청한 주택에 당첨되지 못할 수 있음
- 계약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활용 가능

타지역에서의 지원주택 시범사업

<p>노숙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 행복하우스(2014. 9.) • 사단법인 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 성지하우스(2015. 7.) <p>발달장애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2016. 7.)

계약의 주체에 따라 형태가 나뉠 수 있음



2) 주택정비(일시적전환주택의 경우)

주택정비

- 운영기관은 입주자가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공간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간은 다음과 같이 깨끗하게 청소와 정리가 되어있어야 함

- 입주자 입주 전 환기
- 계절에 관계없이 온수와 난방 보일러 작동을 확인
- 에어컨이 있을 경우 가동 시 냄새가 나지 않는지, 냉방이 잘 되는지 작동을 확인
- 햇볕이 잘 드는지 곰팡이가 생긴 곳은 없는지 확인
- 냉수가 잘 나오고 배수구로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
- 변기의 수압 확인
- 가전제품 중 파손된 제품이 있는지 확인 →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입주 비품 체크리스트에 명시 → 파손정도가 심하여 사용이 어려우면 새것으로 교환
- 가전제품 중 건전지를 사용하는 리모콘 등이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
- TV수신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 방충망이나 창문틀에 먼지가 없는지 확인
- 침구류가 있을 경우 눅눅하지 않은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

필요 비품

-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은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있으나 대체로 고가이며 입주자가 준비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 중요한 가전제품을 비치하는 것이 필요함
- 원룸빌라의 경우 기본옵션으로 있을 수 있음
- 기관에서 제공한 전자제품은 비품등록을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아래와 같은 비품스티커를 부착함

비품스티커의 예

관리책임자	정	운영기관
	부	입주자
품명	전자레인지	
품목번호	XX - XXXX	
취득일자	201X. XX. XX	
사용위치	주택 XX호 - 주방	
재물조사일	201X. XX. XX	
기관명	태화생수는집	

- 생활을 위해서는 가전제품 외에도 소모품과 비품이 필요
- 비품을 제공 여부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결정
- <9. 태생집 2014-10> 물품구입 리스트를 참고하여 비치할 물품을 결정하거나 입주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안내할 수 있음

우리의 경험

비품 제공 시 유의할 점

- 입주 전 / 후로 확인할 수 있는 비치된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 소모품을 지원할 때 지원물품 개수에 대한 규정 구비
- 악물 부착용으로 인해 침을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침구류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베개커버를 추가로 지원
- 약 달력을 비치하여 약물관리 지원
- 평균적인 제품을 구입. 비치되어있는 가전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고급일 경우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입주자는 퇴거 이후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비치된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주자와 운영기관이 함께 함

입주자가 준비해야 할 것

입주 시 소지해야 하는 물품

- 개인의류
- 개인위생용품
- 개인 화장품
- 복용 약

- 입주자가 식사준비 경험이 많이 있을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근 마트나 시장을 활용해 쌀과 반찬 등을 함께 준비하고 냉장고를 채우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

3) 이용자 선정

기준

- 참고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

기관명	입주자 선정 기준 ¹⁰⁾
동지주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법의 중증정신질환자 중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 시설 및 병원에서 퇴소하여 주거지가 필요한 자 복귀할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3개월 이상 입원(소) 중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해 공공사례관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자
행복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으로 정신질환자, 알코올환자, 기타 질병(환)으로 재활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자립의지가 있는 자
Pathway to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1년 이상의 노숙과 중증 정신질환
Community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이나 중독, HIV/AIDS 문제를 가진 만성노숙인 혹은 노숙위험대상. 특히, 지난 4년 동안 최소 2년을 노숙인 쉼터나 거리에서 지낸 단신 성인 지난 2년 동안 최소 1년을 쉼터나 거리에서 보내고 장애가 있는 단신 성인 지난 2년 동안 최소 365일을 노숙인 쉼터에서 보낸 가족을 우선순위로 선정
CSP-NJ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립정신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 주거시설에서 퇴소를 원하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 지역과 상황에 맞게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필요
- 공공임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반영해야 함
-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적 테두리 내의 주거취약계층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함
 - 정신장애의 경우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가족과 동거, 입원(소) 후 퇴원하는 경우 주거취약계층에 속하지 못함¹¹⁾
- Community Access의 경우 최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려¹²⁾

-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 무주택자인가
- 이집 외에는 다른 주거수단이 없는 사람인가
- 입주했을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 저소득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가
 - 이때 입주자의 생활기능을 선정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10) 해외사례 :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민석, 2017.

1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49호, 2017. 5.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최근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12) 기관방문 인터뷰 발췌.

4) 계약 및 입주

계약(거주)기간

- 계약기간은 민간 / 공공에 따라 다름, 입주자의 상황과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름

(1) 기관소유의 주택

- 운영기관에서 결정 가능
-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는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나 주택의 유형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우리의 경험

- '동지주택'의 경우 최초 운영시 6개월간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1년 뒤 기간이 너무 짧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1년으로 연장함
- 4채 중 1채는 다른 대안이 없는 입주자에게 1년 8개월간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자간의 형평성이나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함

(2) 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거나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에 따름
- 매입임대주택의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2년마다 총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음(2017년 현재)
-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

계약방법

- 입주자, 즉 당사자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함
-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7. 태샘집 2014-07> 주택의 규칙 참조
- 규칙은 입주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한사항은 많이 않는 것이 좋음
- 제한사항에 대해 입주자가 납득하기 힘들어 한다면 설명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임대료

- 임대료 납부는 주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임

해외의 사례¹³⁾

- 미국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처는 저소득자에게(지역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임. 입주인 총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바우처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해 줌
- 꼭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처가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주거지원 정책이 소득의 10~40% 안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 Pathway to Housing은 임대료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수취인 약정 제도를 사용함. 임차인들의 소득은 대부분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소득보장급여임. 이 제도를 사용하여 기관이 소득보장 급여를 대신 받고 임대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주자에게 주고 있음
- 거의 모든 지원주택유형에서 퇴거예방을 위해 체납 임대료지원 서비스가 제공됨

- 우리나라의 경우 맞춤형 주거급여 외에 직접적으로 임대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 입주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도록 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서비스 제공동의

- 운영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동의는 입주 필수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 입주 뒤 끊임없이 입주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13)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민석, 2017.

5) 퇴거조건 및 절차

- 입주자에게 요구되는 주거규칙을 위반할 경우 기관사정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퇴거 관련 자격

구분	기준
입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가입자
퇴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기준 50% 초과 부동산 1억2660만원 초과 자동차 2489만원 초과

- 그 외 퇴거기준으로는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밖의 계약내용 중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로 정해놓고 있음
- 퇴거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기관명	퇴거예방노력 ¹⁴⁾
동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금을 활용한 임대료 지불 계약을 기관이름으로 체결하여,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임차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을 짐 임대료 체납을 막기 위해 재정관리계획을 지원
Pathway to Hou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수취인 약정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지불 수도세나 전기세를 기관에서 지불 계약을 기관이름으로 체결하여,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임차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을 짐
Community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체납을 막기 위해 재정관리계획을 케어코디네이터가 지원 입주자의 지속적인 임차의지가 있을 경우 케어코디네이터는 뉴욕시의 임대료체납 지원금 프로그램이나 노숙예방 기금으로 연계하여 퇴거를 예방
CSP-NJ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자체로 개발한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활용, 교육 및 5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 등

14) 해외사례 :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 자료집, 김민석, 2017.

지원주택의 서비스

- 주거서비스 지원 단계를 입주 전후인 전환단계, 초기적응단계, 이후의 유지단계 세 단계로 구분
- 입주 이후 시간에 따라 입주자의 욕구와 위기의 종류가 바뀌고 그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어 단계를 설정함
- 각 단계별 기간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은 개인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전환단계

1) 전환단계의 개요

전환단계의 의미

- 퇴원(소) 이후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선택하여 전환하는 시기
- '주거공간'이란 공공/민간 임대주택이 될 수도, 지원주택이 될 수도 있음
- 다소 구조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주택계약, 전입신고 등 행정처리, 물품구입의 활동을 포함함

전환단계의 목적 및 목표

- 계약절차, 행정처리, 물품구입 등 입주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사 1~2개월 전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함
- 입소자의 경우 전환을 위한 재정·생활 준비를 2~3년 전부터 시작할 수도 있음
- 직원, 동료자립지원가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입주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음
- 이 단계부터는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시작함

전환단계 입주자의 역할

-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입주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함
- 주거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인테리어를 하고, 물품을 구입함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보다는 권리로 인식해야 함

2) 전환단계 지원서비스

이사계획

- 퇴계약한 집 하자보수 점검 : 보수할 곳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나 주택공사, 혹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함
이시기에 보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입주 이후에 한동안 불편을 겪거나 보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정신장애인 당사자용 자립생활 매뉴얼¹⁵⁾ p.19 주택하자 체크리스트)를 활용
- 이사 방법 결정 : 경제사정에 따라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용달이사 등 결정
- 이사 2주 전 :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고 구입할 가구나 가전에 대한 예산을 책정
- 이사 1주 전 : 가구, 가전 구입을 시작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삿짐 포장
이때 이사용 이민가방이나 큰 박스를 지원해주면 용이함

이사 서비스

- 이삿짐이 적은 경우에는 기관의 차량지원을 받아서 운송
- 짐이 많을 경우 용달업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거리와 짐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또한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2~3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좋음
- 경우에 따라 이사용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짐이 많지 않은 경우 지불이 강제되지는 않음
- 짐을 집까지 옮겨줄 수는 있으나 집 안에서는 입주자가 직접 정리하는 것이 좋음. 어떤 위치에 무엇이 수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지원인원은 청소나 가전배치 등을 지원함
- 이사 중 이웃을 마주치면 입주자가 직접 밝게 인사하고 본인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음
이웃도 입주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행정 처리

- 주민센터 : 전입신고, 확정일자, 복지서비스 신청
- 관리사무소 : 1개월 분의 관리비 혹은 임대료
- 은행 : 계약금 잔금납부, 공공요금 자동이체 신청

우리의 경험

- 이사 전 이사 갈 집 근처를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함
- 공간의 도면을 미리 그려서 가구 배치나 동선을 고려하도록 하여 공간에 빨리 익숙해 지도록 지원
- 위기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입주자의 핸드폰에 입력해 놓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처리 은행 : 계약금 잔금납부

정신장애인 당사자용 자립생활 매뉴얼

- 전환단계 이사지원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용 자립생활 매뉴얼 p.18~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¹⁵⁾ www.fountainhouse.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2. 초기적응단계

낮선 환경에 대한 초기경험이 자립생활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므로 개입을 통해 자립생활을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 이사 직후 초기 개입의 중요성

자립생활의 시작

- 이사가 끝난 뒤 함께 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 처음으로 '혼자 남았다.'라는 감정이 체감됨
이는 어쩌면 흥분하거나 자유로운 감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외로움일 수도 있으며 복합적일 수 있음
- 이 감정이 너무 강하다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입주자의 경우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전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사 직후 초기지원서비스

초기 적응 단계에서의 적절한 지원

- 낯설음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
- 이사 이전의 편안한 일상생활 수준으로 돌아오면 안전하게 유지단계로 진입한 것임
- 두려움, 새로운 주거공간, 지역사회 환경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해소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망 연계가 필요함

구분	내용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가 혼자 있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으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강해질 수 있음 • 밤에 느끼는 두려움은 낮에 느끼는 두려움 보다 훨씬 강하고 위험할 수 있음 • 두려움이 완화되도록 직원이나 동료자립지원가가 집에 함께 있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TV나 라디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주거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설음과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음 • 충분한 면담을 통해 지원하고, 불안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필요에 따라 동성인 직원이나 동료자립지원가가 함께 잠을 자는 것도 안정되는데 도움이 됨
지역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일상생활과 직결된 시장, 병원,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등의 물리적 환경의 위치와 이용방법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입 • 함께 일상생활 동선을 체크하면서 이동해보는 것도 중요하며 주변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이용가능 서비스를 탐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우리의 경험

- 초기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초기 방문 빈도를 높여야 함
- 이사 지원 후 저녁시간과 다음 날 아침 전화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함
- 태화샬롯는집은 입주 1주일까지 매일 면담, 주3회 이상 방문 지원함

규칙적인 생활 패턴 회복

- 약물관리와 취침시간에 대한 안내와 점검
- 아침과 낮 동안에 해야 할 일에 대해 공유
- 취업장에서의 변화는 없는지 확인

구분	내용
취업장의 업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장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입주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 변동 사실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이사 이후 당분간은 평소보다 피곤해한다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고양되어 있거나 지각을 하는 등의 사항이 있을 때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

우리의 경험

-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고 '동지주택'에 입주한 정신장애인 중 한명은 자립생활 시작 이후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가 지각을 여러 차례 하였음. 이후 입주자도 위기의식을 느꼈으나 자율성으로 인해 생활패턴이 쉽게 돌아오지 못했음. 이에 오후 5시 이후 커피를 삼가고 약 한 달간 취침콜과 모닝콜을 제공했고 곧 다시 안정적인 생활패턴을 되찾음

3. 유지단계

1) 유지단계의 개요

유지단계의 의미

- 병리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삶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의미임
-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당사자 자신이 스스로 자립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함

유지단계의 목적

- 자기관리를 잘하는 것
-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것
- 기관의 직원이나 가족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유지하는 것

목적 달성하기 위한 목표의 예

- 식사를 끼니에 맞춰 해결함
 - 재정상태를 알고 수입에 맞추어 소비함
 - 가족과 기관의 관계를 유지
 - 위기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함
- 목적과 목표가 없을 경우 지역사회 속에 고립되거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것 자체를 후회 할 수도 있음

2) 유지단계 지원 서비스

우리의 경험

태화생수는집의 최소한의 면담 및 방문 횟수

- 입주 1주일까지 매일 면담, 방문 3회
- 입주 1주일부터 1달까지 주 1회 면담, 방문 2회
- 입주 1달부터 2달까지 주 1회 면담, 주 1회 방문
- 입주 2달부터 3개월까지 주회 면담, 격주 1회 방문

식생활 관리

-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님
-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해야 한다기 보다 한 끼를 때운다는 인식이 팽배함
- 주로 여성보다 남성 입주자의 식생활이 불규칙적, 영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입주자가 많이 있음. 정보제공이 필요

우리의 경험

- 태화생수는집에서는 이사 당일 저녁식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이후 귀가함

(1) 아침 식사와 주말 식사

- 아침식사는 전일 밥술에 미리 밥을 해 놓고 먹는 것이 좋음
- 주말에는 입주자가 세 끼를 다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기관이나 가족이 주말 식생활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 비정기적으로 방문,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밀반찬 만들기와 지원 서비스

- 식재료 구입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함
- 상황에 따라 만들어 먹는 음식이 더 가격이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서비스보다 입주자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
- 지역사회에서 밀반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큰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연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우리의 경험

- 태화생수는집에서는 기관 자원봉사를 활용해 자립생활을 하는 정신장애인들과 밀반찬을 만들기도 함
- 만들어진 밀반찬은 그날 저녁식사를 하고 각자 비용을 낸 만큼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함

정서적 지원 서비스

- 외로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임
- 외로움을 조절하기 위해 등록된 기관이나 취업장에 출근하는 생활패턴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취업은 경제활동을 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회적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책임과 보상이 따른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정신장애인의 성문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관심 밖으로 두는 경우가 있으나 차별적 관점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개입해야 함

우리의 경험

-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정신장애인에게 관계가 있는 동료자립지원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안부전화를 하는 등의 서비스는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효과가 높게 나타남
- 입주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임.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조모임, 가정방문, 취미생활 공유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자조모임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자조모임 워크북'¹⁶⁾을 활용할 수 있음

주택환경 관리

- 주택 내외부 환경을 청소, 정리하여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함
- 깨끗한 공간은 신체건강 외에도 안정된 기분을 줄 수 있음
- 가정방문 시 집이 깔끔하다는 평가를 하면 입주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
- 분리수거날짜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눈에 띄는 위치에 요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음
- 지원주택의 경우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모아놓아 악취가 나는 등 자신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제재가 필요함. 이는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사항이 될 수 있으며 입주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함

우리의 경험

- 귀찮음 때문에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소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청소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

16) 2017년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된 워크북, www.fountainhouse.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신체건강 관리

- 정신건강만큼 신체건강에 대한 관리도 중요함
- 신체건강은 식생활, 내부 환경, 재무상황, 정서 등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받음
- 감기나 몸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문하여 지지해야 함

우리의 경험

- 보건소에서 배포한 10분 스트레칭 등 포스터를 '동지주택'내 부착하여 매일 취침 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조모임을 활용하여 식사와 주제 나눔 외에 신체활동도 함께 진행함

계약(거주)기간

(1) 수입과 지출관리

- 수입
 - 수급자든 비수급자든 일정한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입으로 판단하고 제테크 전략이 필요함
- 소요되는 지출의 종류
 - 월 임대료, 공과금, 생활비, 여가비 등

(2) 생활비 관리를 위한 제테크

- 유지단계 재정 관리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함
 - 첫 째로 임대료, 인상될 보증금에 대한 비축, 각종 공과금 등 주거유지비를 최우선으로 준비함
 - 두 번째는 식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함
 - 세 번째는 여가비임

여가비의 중요성

- 여가비가 없으면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할 수 있음. 이때 흡연과 음주문제에 개입이 필요함
- 월 수급비가 50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흡연에 사용하는 비용이 14만원(하루 1갑×30일) 정도 된다면 전체 수입의 28%를 흡연에 사용하게 되므로 생활에 문제가 발생함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별 가계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 작성을 입주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놓는다면 단기간에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함께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우리의 경험

- 흡연으로 인해 금전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동지주택'입주자와 합의를 통해 금전관리를 지원함. 수입의 일정부분을 기관금고에 보관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을 관리하였고 1년 동안 착실히 저축을 한 결과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가전을 구입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음
- 입주자는 항상 통장을 소지하며 틈이 날 때마다 꺼내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자립생활 재정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됨

- 목적과 목표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나 가족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정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모아 놓은 비용을 한꺼번에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3) 여가비 관리

- 여가문화 중 흡연과 음주,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문화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문화임
- 만약 습관적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입주자라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가족과 기관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어야 함
- 흡연과 습관성 음주문제는 생활태도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음. 그러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어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상기 문제에 개입할 주위 자원이나 지지체계를 확보해야 함

(4)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재테크

- 자립생활 유지단계에서 취업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음
- 취업을 유지하는 입주자일수록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만족도가 높음
- 입주자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취업장 탐색과 면접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5) 위험관리

- 위험 발생 후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이 악화되거나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위험관리가 필요함
-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 화재로 인해 한 순간에 모아둔 돈을 쓰게 되어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회사 전문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필요함
- 보증, 대출, 보이스피싱 등 위험요소는 산재해있으므로 지출 전 직원과 상의할 수 있도록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함

지역사회 자원연계

(1) 지역 기관의 사후관리의 필요성

- 자립생활 이후에도 기관과의 연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입주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 자립 이후 다른 서비스나 기관에 연계되지 않는다면 결국 입주자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음

우리의 경험

- 자립생활을 시작한 이후 기관 출근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안부확인 으로 출근 할 수 있게 하고 입주자가 기관에 출근 해야만 하는 이유(취업장, 역할부여, 식사해결 등)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부득이하게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인근의 다른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함
- 어떠한 경우라도 고립되는 상황은 피해야만 함

(2)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이용

- 입주자의 지지체계망을 확보
- 주거지에서 진료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자립생활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주치의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입주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주치의와 공유해야 함

우리의 경험

- 음주 문제를 갖고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입주자에게 이웃인 통반장과 연계하여 간헐적으로 반찬 및 청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음

(3) 공과금 납부를 위한 은행 업무(가스, 전기, 전화, 수도, 각종 세금 등의 납부관련업무)

- 은행에 방문해서 대기번호를 받고 공과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요청하는 절차를 경험할 필요가 있음
- 자동이체를 신청한 통장에 대해서는 지정일에 공과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잔액을 관리를 해야 함

(4) 이웃과의 관계

- 이웃 간의 관계는 누구나 어렵게 느낌
- 최근엔 이웃간의 관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이웃들과 특별히 친하게 지내거나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으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에티켓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음

에티켓의 예

- 저녁 8시 이후 소음을 내는 행위를 자제
- 저녁 10시 이후 빨래나 샤워 등. 물을 사용할 경우 이웃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음
- 주택 내 흡연은 금지하도록 함

가족의 협력

(1) 일상생활 유지지원으로서의 협력

- 가족의 정기적인 방문
 - 가족도 가정방문을 통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대화해야 함
 - 간헐적인 방문을 통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가족의 정서적인 지원은 직원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상의 지원이 되기도 함
 - 가족이 밑반찬을 만들어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입주자에게 큰 도움이 됨
- 가족의 소진
 - 보호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지체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어려움에 지쳐 소진된 가족이 많음
 - 하지만, 긴 세월 정신장애인 자녀들을 돌보아온 보호자는 자녀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가족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2) 가족교육을 통한 협력

- 가족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자립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
- 가족의 역할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때 직원도 역량강화를 경험할 수 있음

우리의 경험

- 서비스제공 동시 보호자에게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이 협약서는 강제력을 띠고 있지는 않으나 보호자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참여를 유도함
- <5. 태생집 2014-05 보호자 협약서> 참조

증상관리

(1) 평소에 관리해야 하는 증상관리

-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약물관리를 해야 함
- 약물의 변화가 있을 때 직원과 공유해야 하며 입주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 정기적으로 주치의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2) 위기상황 대처

-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약물관리를 해야 함
 - 입주자는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함
 - 이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뢰감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이 필요함
 -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본 본인이나 동료자립지원가의 경험이 의미 있을 수 있음
- 투약관리
 - 입주자만이 가지고 있는 투약관리 방법을 지속 활용

우리의 경험

- 약 달력을 활용하여 약물관리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체계 구성
 - 위기가 발생하면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성
 - 자립생활 초기부터 비상연락망 비치, 연락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입주자의 실직과 주거지 전환, 가족에게 버림받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기로 보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입주자에게 위기가 오면 병원에 입원할 수 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원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어느 병원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원하게 되는지 미리 작성해서 비치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됨

지원주택의 운영 성과

1. 산술적 평가 ¹⁷⁾

태화섬솟는집에서는 지난 3년간 앞서 언급한 '동지주택' 즉, 지원주택과 유사한 사업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사업의 산술적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주택	이용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 14명(단기체험 3명 미포함) 자립생활전환 : 11명(78.5%)
	자립생활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1% 향상
	평균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3.9%
동료자립지원가	양성된 동료자립지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명
	지원활동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평균 170회
교육 및 전파	매뉴얼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인 당사자용 자립생활 매뉴얼, 동료자립지원가용 매뉴얼 850부 발송, 홈페이지 및 공유사이트 업로드
	주거복지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회 14개 기관 24명 참가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 지지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5.5% 향상
	평균 네트워크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6.2건
Tabol외(2010)	공공주택 확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

1) 지원주택

- 사업 초기에는 체험홍과 유사하게 '동지주택'을 운영하였으나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원주택의 개념을 배우게 되면서 사업의 하반기에는 지원주택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주택의 이용자는 단기체험자를 제외하고 14명이었으며 그중 자립생활로 전환한 인원은 11명으로 78.5%의 이용자가 자립생활로 전환하였습니다. 자립 이후에도 98%의 유지율을 보이며 안정적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지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생활기술은 15.1% 향상되었으며 자립을 위한 목표는 83.9% 달성하였습니다. 자립생활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기초독립생활기술평가(ILSS)'를 입주 전, 퇴거 후 활용하였으며 자립생활 목표는 <4. 태샘집 2014-04 입주자 활동 계획서>를 활용하였습니다.

17) 정신장애인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문용훈, 2017

2) 동료자립지원가

- 지원주택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동료자립지원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주택에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 동료자립지원가들은 7개의 주거지원 영역(주거환경지원, 이사지원, 재무관리, 지역사회자원동원, 식생활지원, 건강관리, 정서적지원) 중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지원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3년간 2번의 양성교육에 16명의 동료자립지원가가 수료했고 양성교육에 피치 못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하고자 하는 영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1년 평균 170회 가량의 지원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단순계산으로 동료자립지원가 1명이 1년 간 약 10회 가량 지원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교육 및 전파활동

- 지원주택을 포함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해 욕구가 높아지면서 교육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거복지아카데미'를 통해 주거복지서비스의 흐름, 서비스 제공 방법, 지원주택 등에 관련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2년간 4회 진행했고 총 14개의 기관에서 24명이 실무자와 당사자가 참여했습니다.
- 사업이 '동지주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와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당사자용 자립생활 매뉴얼', '동료자립지원가용 매뉴얼'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습니다. 2017년에는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모임인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워크북'을 발간하여 마찬가지로 업로드 했습니다.

4) 네트워크 구성

-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 그 결과로 태화섬솟는집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지지척도는 5.5% 향상되었으며 지원주택 이용자의 네트워크 자원의 개수는 평균 6.2건 연계되었습니다.
- 공공주택 확보율도 75%로 정신장애인 평균 공공주택 이용률 5.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5) 비용적 효과성

-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주택에 대한 법률이 없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임의적으로 정리하여 보았고 지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예산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시설유지 비용 비교(기준 : 뉴욕, 1일 1인, 원)

New York				
계약	정신병원	교도소	쉼터	지원주택
1,303,500	513,700	181,027	59,862	46,560

평균 시설유지 비용 비교(기준 : 한국, 1일 1인, 원)

병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동지주택
의료보호	건강보험	82,192	51,370	31,898
42,740	73,651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지주택이 다른 입원 및 수용시설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지원주택이 42\$(46,560원)로 가장 비용효과성이 좋게 나타났으며 단순추계이긴 하나 한국에서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지원주택 모델인데도 미국과 한국의 비용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비에 대한 차이와 임대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2. 이용자의 경험적 평가¹⁸⁾

태화샘솟는집에서는 2015년 당시 지원주택을 이용했던 이용자 6명에 대한 ‘지원주거 경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반성적 고찰을 통해 분류하고 분석하였습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정보

연구참여자	동지주택 입주기간	비고
연구참여자1	• 2014. 12. 19 ~ 2015. 1. 20(1개월)	• 자립생활 전환 후 5개월 유지
연구참여자2	• 2014. 12. 26 ~ 2015. 2. 27(2개월)	• 자립생활 전환 후 5개월 유지
연구참여자3	• 2015. 2. 5 ~ (5개월 이용 중)	-
연구참여자4	• 2015. 4. 28 ~ (2개월 이용 중)	-
연구참여자5	• 2015. 5. 4. ~ (3개월 이용 중)	-
연구참여자6	• 2015. 5. 20 ~ (2개월 이용 중)	-

18) 정신장애인의 지원주거 경험 연구, 배은미, 박희정, 2017

2) 분류된 주제군

- 수집된 자료를 분석,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27개의 의미와 11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주제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동지주택 입주기간	비고	
혼자 사는 자리로 떠밀림	'남'눈치 보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 곳 없이 떠도는 삶 짜여진 틀에 나를 맞춰야 하는 생활 타인과 같이 사는 어려움 	
	어쩔 수 없는 기로에서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혼자 살아야 하는 두려운 현실을 받아들임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홀로서기	혼자만의 생활을 즐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안도감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생활 	
	타인의 간섭 없이 혼자살기 버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과 무서움 생활리듬 유지의 어려움 	
서로 붙들고 기대어 살아감	직원이 살펴봐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형편을 물어봐 주고 알아줌 일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 	
	동료정신장애인과 서로 돕고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에게서 배움 친구가 되어 챙겨줌 	
'내 집에서 가꾸어 가는 '나의 삶' : 자립의 능력을 다짐	'내 집'으로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집 같은 편안함 내 것으로 소중히 여김 	
	내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격려하며 견뎌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 밖에 없다는 책임감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함	주거시설에서 배운 것을 활용함	주거시설에서 배운 것을 활용함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냄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냄
		버티면서 생활과 감정을 조절함	버티면서 생활과 감정을 조절함
		평범한 일상을 누림	평범한 일상을 누림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감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감		
중상과 약복용에 더 주의를 기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을 거르지 않고 복용함 중상 발현에 대한 도움 요청 		
이웃과 더불어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맺음 이웃간의 예의를 지킴 		

혼자 사는 자리로 떠밀림

- 〈'남' 눈치 보는 삶〉 "내가 옛날에는 주거시설을 많이 옮겼죠. (중략) ○○○○(주거시설)에 있을 때는 3년 만기했죠. ○○○○(주거시설)에 조금 살다가 관악구 ○○○(주거시설)로 떠났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언니 집에도 살다가, 그러다가 수유역(에 소재하는 주거시설)을 내가 알아봐가지고 가서 살고... ○○, ○○에서 오래있었죠. ○○에... 조금 6년 넘게 있었죠." (연구참여자 1)
- 〈'남' 눈치 보는 삶〉 "근데 같이 두세 명에서 이렇게 잠자리를 한 방에서 잔다는 게 전 그게 싫어가지고, 방 같이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방 안에서 뭐, 분실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한 방 같이 뭐 여럿이서 쓰니까, 뭐 잠가 놓는 게 아니라, 캐비닛 잠가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없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6)
- 〈어쩔 수 없는 기로에서의 선택〉 "혼자 살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막 겁나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그런 걱정도 되고... 내가 동지주택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밥도 해먹어야하고..." (연구참여자 1)

동전의 양면 같은 홀로서기

-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안도감〉 "여기선(태화샘수는집) 밥 먹고 5분이면 (동지주택에) 오잖아요.(웃음) 그게 좀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 바로 보이는 앞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뭐가 어렵겠어요.(웃음)" (연구참여자 2)
-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안도감〉 "천천히 그리고 밥도 늦게 먹어도, 일찍 먹어도, 잔소리 하는 사람 없고 혼자 자유이고 주거시설에 있을 때는 대충하더라도 선생님이 빨리 씻으라고... 그게 싫었어요." (연구참여자 1)
- 〈혼자 살아야 하는 두려운 현실을 받아들임〉 "그게 이제 혼자라는 게, 집에 분명히 들어가기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았죠, 제가. 일찍 들어가는 게, 뭐 4시 5시에 들어가면, 진짜 나머지 시간에 뭐해요, 특별히 요리를 누구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 〈혼자 살아야 하는 두려운 현실을 받아들임〉 "(동지주택을 청소하고 나서) 좋아가지고 '깨끗하네' 이려고, 지나면서 게을러 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참...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막 에너지가 있어서 열정으로, 하하하하 그런데 이렇게 '깨끗했어' 그래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깨끗하다고 좋아 했고, 지금은 그런 소리는 없더라고요, 깨끗하다는 소리(웃음)...(중략) 처음에는 잘 해먹었던 거예요.(웃음) 예 처음에는 진짜 여러 가지 해 먹었어요. 해 먹었는데, 요새 들어 막 자꾸 나가서 사 먹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 '귀찮다' 이런 뜻으로. (연구참여자 5)"

서로 붙들고 기대어 살아감

- 〈직원이 살펴봐 줌〉 "직원들도 '최○○씨 혼자 살면 잘 살겠다' 그런 말씀 해 주더라고요. 샘집 직원들이 그냥 와 주는 거 반갑게 생각해요. 와 주는 거,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가 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연구참여자 1)
- 〈직원이 살펴봐 줌〉 "그니까 동지주택에 있으면서 여기, 태화샘수는집도 가깝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또 상태가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외로움도 많았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랬고, 샘수는집도 가깝고 하니까 혼자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샘수는 집이랑 가깝고... 선생님도 오셔서 살펴봐 주시기도 하고... 뭐, 부족한 거 있나 살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다녀간 거 자체로 도움이 되죠. 찾아오면 반갑죠." (연구참여자 2)
- 〈동료정신장애인과 서로 돕고 배움〉 "아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그랬어요. 민○○ 언니를 만나서 그게(외로움과 무서움) 없어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니까, 방문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방문도 하고." (연구참여자 5)

‘내 집’에서 가꾸어 가는 ‘나의 삶’ : 자립의 능력을 다짐

- **〈‘내 집’으로 생각됨〉** “편하다는 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리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웃음) 그리고 실제로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정신세계도 편안하고.” (연구참여자 2)
- **〈‘내 집’으로 생각됨〉**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좋았어요. 내 집 같아서... 밥해서 먹고 자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담하고 그러니까 내 집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살다 보니까 꼭 내 집 같아서 편해요 일단 거기 가면 이제.” (연구참여자 5)
- **〈이웃과 더불어 삶〉** “롯데마트는 아예 한꺼번에 많이 살 때, 거기 2만원 이상이면 배달해준대요. 그래서 왕창 살 땐 거기서 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씩 살 때는 우가마트. 저 우가마트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아줌마랑 친해요. 그러가지고 저번에 머리 자르고 가니까 그 분이 ‘어 머리 자르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5)
- **〈내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 “살면서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그랬어요. ‘내가 잘 살겠지...’ 그런 생각...” (연구참여자 1)
-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함〉** “고시원에서는 누가 오거나 머 말거나 이렇게 조그만 방이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동지주택은 그래도 고시원 보다 좀 크니까 좀 누가 오면 좀 신경이 쓰이죠.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고, 네 뭐 음식도 대접해야 되니까 좀 만들게 되고, 밥도 이렇게 직접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고시원에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동지주택에 오게 되니까 그래도 청소도 하게 되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하게 되고 그런 게 달라졌죠.” (연구참여자 6)
- **〈증상과 약복용에 더 주의를 기울임〉** “그런 면도 약간 있는데요. 그니까 나는 증세가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막 해요. 나 불안한 것 같다고, 여기 회원지원부 직원 분한테, 뭐, 꼭 한 분한테 국한하지 않고 이런 분 저런 분한테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연구참여자 3)
-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함〉** “그러니까 있는데 막 더 사지 말고, 아직 만약에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그 때 사는데, 꼭 찻는데도 제가 사고 그랬거든 그 전예요. 그런 것도 좀 잘...” (연구참여자 5)

3) 연구 결과

- 연구 발견된 정신장애인의 지원주거 경험을 관통하는 가장 큰 맥락은 ‘남’ 눈치 보는 삶에서 ‘내 집에서 가꾸어 가는 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연구 참여자들은 ‘내 집’에서 나의 삶을 꾸려가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며 일상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또한 버티면서 생활과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 등, 자립을 위한 여러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살고 있는 곳을 ‘내 집’으로 규명함으로써 안정성, 독립성, 편안함, 가정생활 등이 창출되며(Jones et al, 2003), 통제권을 획득함으로써 역량이 강화되고(Parkinson and Nelson, 2003)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 결과(Goering et al, 1992; Ogilvie, 1997; Jones et al, 2003; Corrigan and McCracken, 2005)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제언

-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결과 도출된 ‘내 형편을 물어봐 주고 알아줌과 ‘일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는 정신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서적 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방문, 면담을 통한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서비스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정상화의 관점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합니다.
- 둘째 우리나라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주거의 형태가 아직 공식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경성적인 주택과 연성적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결합하여 지원주거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셋째 꼭 지원주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신장애인이 ‘갈 곳 없이 떠도는’ 삶을 종식하고 ‘내 집’으로 여길만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소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즉 임대주택이나 전세, 월세로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내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넷째 지원주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 ‘직원이 살피봐 주고’, ‘동료정신장애인과 서로 돕고 배움’으로 ‘서로 붙들고 기대어 살아가며’ 자립의 틀을 다져 갈 수 있었습니다. 주택 제공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정신장애인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Tsemberis and Eisenberg, 2000; Jones et al, 2003; 태화샘솟는집, 2013; 홍선미 외, 2013), 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태샘집 2014-06) 방문일지

방문일지

		담당	담당	사무국장	관장
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방문대상	지 원 자				
지원내용	<input type="checkbox"/> 식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약물관리 <input type="checkbox"/> 주택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정서적지원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후계획					

		담당	담당	사무국장	관장
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간 : ~ :			
방문대상	지 원 자				
지원내용	<input type="checkbox"/> 식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약물관리 <input type="checkbox"/> 주택환경관리 <input type="checkbox"/> 정서적지원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후계획					

태샘집 2014-07) 주택의 규칙

주택의 규칙

- 당신이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비밀번호는 직원과 공유한다. 직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출입문에 추가적인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지갑이나 핸드폰에 미리 번호를 저장해 놓는 것이 좋다.
- 주택을 원래 상태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파손을 일으킨 자가 지불한다. 이는 주택의 기물파손을 막고 적절한 관리를 보증하기 위함이다.
- 이유가 있는 일상적인 마모가 아닌 거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에 대한 파손 또는 주택을 수리하는데 모든 비용은 입주자에게 청구되며 30일 이내에 지불하도록 한다.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파손의 경우 퇴거의 이유가 된다.
- 입주자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전 기관의 직원이 사용방법을 보여주고 안내한다.
- 모든 주택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운영기관 직원과 도시공사에서 나와 불시에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지보수를 보장하고 필요한 수리를 확인하여 주택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점검은 6개월 또는 그 이후마다 진행된다.
- 무언가를 벽에 걸 경우, 불필요하게 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못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운영기관의 사전허가 없이는 어떠한 벽에도 이물을 걸어서는 안된다.
-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 정해진 시간에 내놓도록 한다. 상자와 같은 다른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을 내놓는 시간에 내놓는다. 변기 및 하수설비들은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파편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그 안에 버리지 않는다. 화장실, 샤워부스, 싱크대 배수구 등에 입주자나 입주자의 손님의 물건으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요구에 따라 입주자가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지속될 경우 퇴거의 이유가 된다.
- 운영기관의 서면허가를 받지 않는 한 주택의 어떠한 표면이나 벽지에도 페인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의 표준 색상만 허용된다. 가구와 벽 양쪽에 지나친 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구들은 벽과 조금 떨어뜨려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가구의 바닥에는 집안의 바닥이 긁히지 않도록 보호패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 밤시간(10:00pm이후 07:00am이전)에 세탁은 금지한다.
-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필요한 전구를 총당해서 사용해야 한다. 입주자가 구입한 전구는 퇴거시 제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다.
-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관문을 닫아놓도록 한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자만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 입주민 외 다른 사람은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13.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택 주변에 있을 경우 기관 직원에게 알린다.
14. 이웃을 존중하도록 한다. 라디오나 오디오, 텔레비전, 또는 다른 활동들로 인한 다른 입주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소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 입주자들은 자신의 방문객들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다른 집에서 이유 없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기관직원에게 알린다.
15. 입주자는 매년 14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님을 재울 수 있다. 이외의 하숙이나 다른 사람에게 숙박시설로 주택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개인 주택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16. 입주자는 손님을 숙박하기 전 기관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것은 입주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이다.
17. 아이들의 경우 짧은 시간 방문은 가능하다, 입주자와 같이 살거나 밤을 보내서는 안 되며 장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아이가 방문한다면 항상 지켜봐야 한다.
18. 만약 입주자가 외박을 하는 경우 돌아오는 날짜를 직원에게 알리고, 돌아온 이후 사무실에 이를 알리도록 한다. 이것은 입주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이다.
19.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초대받지 않은 한 다른 주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20.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초대받지 않은 한 다른 주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21. 공동공간 내 불법약물, 음주행동, 시끄럽고 떠들썩한 잡담, 불경스러운 언행은 금지되어 있다.
22. 주택단지의 쓰레기 처리장에 담배꽂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23. 화기 또는 다른 공격적인 무기를 자산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4. 주택 외판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25. 주택 내, 외부 어디에도 간판, 광고, 공고 또는 다른 문구들을 게시하거나, 공지하거나, 부착해서는 안 된다.
26. 가전제품에 오작동이 있을 경우,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모든 시설 및 가전제품들은 기존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다른 추가적인 가전제품 사용은 금지 된다.
27. 입주자는 수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 직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28. 주택에 등유, 휘발유, 또는 다른 폭발/인화성 물질은 반입이 금지된다.
29. 모든 입주자는 주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배수 또는 배관의 범람 시 손상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30.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규정
 곰팡이발생과 증식을 줄이기 위해 당신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습한 물질을 제거한다. 벽의 습기, 창문, 창턱, 바닥, 천장, 옷장 및 화장실 시설을 포함한 당신의 방에 있는 모든 습한 물질을 즉시 제거한다. 흘린 액체는 물기를 빨아들여 없애고 가능한 빨리 건조시킨다.
 2) 방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방을 정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먼지를 제거하도록 한다.
 3) 다음의 내용은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a. 누수, 과도한 습기, 또는 방안에 고여있는 물
 b. 락스나 살균제를 사용해도 제거되지 않는 곰팡이
 c. 에어컨 및 환풍시스템의 오작동
 d. 방안 또는 다른 공간의 곰팡이 냄새
 위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자산손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1. 연장코드전선을 2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화재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32. 모든 입주자는 입주자 측의 과실로 인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33. 공동공간 내에서는 외출복을 입도록 한다.
34. 입주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납기일이 지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며, 입주자가 정해진 임대료 납기 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35. 현관문 앞을 깨끗이 하도록 한다.

이상의 규칙은 입주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택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에 입주자들은 모든 규칙들을 준수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퇴거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공동체 규칙의 위반은 임대계약의 불이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0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20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북

발행일 2017. 10.
발행인 문용훈
편집인 태화샘솟는집 주거지원부
발행처 태화샘솟는집
0412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20(아현동)
전화 02-392-1155
팩스 02-363-5468
홈페이지 www.fountainhouse.or.kr
대표메일 fountainhouse@hanmail.net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디자인 디자인봄 www.design-bom.kr

이 책의 저작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태화샘솟는집에 있습니다.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 제C-2017-034721